##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13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이연희·정준호·김남희

김정호 · 최기상 · 복기왕

허종식 • 정성호 • 유종군

김윤덕 • 문진석 • 황 희

문금주 • 박상혁 • 이춘석

맹성규 • 한민수 • 민형배

이정문 · 이광희 의원

(2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여객공항사용료'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여객공항사용료'의 경우 항공권 구매자가 구입하는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으나, 항공권 구입 후 항공권 취소 등의 사유로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항공권 구매자는 자신이 지불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항공권 구매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시설이나 비행장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납부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4항제3호 신설).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2(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 청구 등) ① 항공 여객이 공항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료(이하 "여객공항사용료"라고 한다)를 납부한 후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반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공항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여객공항사 용료 납부자에게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공항시설의 이용이 예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로귀속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객공항사용료 청구 방법·절차 및 고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제6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공항사용료 납부자에게 여객공항 사용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하지 아니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 고지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는 사실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2(여객공항사용료의 반
	환 청구 등) ① 항공 여객이
	공항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료(이하 "여객공항사용료"
	라고 한다)를 납부한 후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반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공항사용
	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공항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에 여객공항사용료 납부자에게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3회 이상 고
	<u>지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여객공항사용
	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는 공항시설의 이용이 예정
	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제69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⑤ · ⑥ (생 략)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로 귀속 된다.

- 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 객공항사용료 청구 방법·절차 및 고지 방법 등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6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4 ---------
- 1. 2. (현행과 같음)
- 3.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공항사용료 납부자에게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3회 이 상 고지하지 아니한 자
- ⑤·⑥ (현행과 같음)